

『보통예금』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『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보통예금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. 상품개요

- 상품명 : **보통예금**
- 상품특징 :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매일의 잔액에 대해 동일한 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입니다.

2. 거래조건

- **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 내용에 따릅니다..**

구분	내용
가입대상	법인
상품유형	보통예금
가입금액	제한없음
거래방법	- 신규 : 서울지점 영업점 - 해지 : 서울지점 영업점
이자지급시기	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, 12월의 28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(원가일)에 원금에 더함. (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이자지급의 방법이 바뀌지 않습니다.)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-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-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		
기본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총수신금액이 홈페이지 게시된 금액 이하인 법인 거래처에 대하여 기본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예금주의 별도 지시없이 매월 10일에 20만원의 기본수수료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.(고객별 1건) - 기본수수료 납부 고객에게는 매월 소정의 이체 수수료 면제 등 은행 홈페이지(https://www.gbm.hsbc.co.kr/useful-information/cmb-charge)에 게시된 혜택을 제공합니다. 		
기본이자율	은행 홈페이지 게시(http://mail.hsbc.com.hk/kr/PWS_daily/kr/copinterest_rate.htm)		
이자 산출근거	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해당 원가일 전일 까지를 부리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정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또는 은행과 거래처간에 합의된 이율로 계산함.		
계약의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해지신청서 제출을 통한 해지 - 해지시 불이익 : 해당 없음 		
연계·제휴서비스	해당 없음		
예금자보호여부	<table border="1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 text-align: center;">해당</td> <td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td> </tr> </table>	해당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해당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
자료열람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•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		
위법계약해지권	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.		

계약해지방법	서울지점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
휴면예금 및 출연	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(휴면예금 및 출연)에 따라 “서민금융원”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

3.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본 상품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기업자금관리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담당심사역(RM), 고객관리담당자 또는 기업자금관리부 (hsbc.korea.gps@kr.hsbc.com 또는 02-2004-0168)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<https://fcsc.kr>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